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임자	금융위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84)	담당자	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87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 (02-3145-7290)		이목희 팀장 (02-3145-7292)
	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 김 정 흠 (02-3145-7860)		류태열 팀장 (02-3145-7864)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. 7. 3일 제13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스튜디오썸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(금융위 결정), 감사인 지정,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
- 2017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 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(14개사), 경고(41개사), 주의(52개사) 조치를 의결하였음

※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

제 출 처	■ 금감원 다탈(DART) 접수시스템		
제출서류	■ ①재무상태표, ②(포괄)손익계산서, ③자본변동표, ④현금흐름표, ⑤주식 ※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		
제출시점	■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(연결 포함)를 제출할 때		
	개별(별도) 재무제표	연결 재무제표	
		K-IFRS 적용 회사	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
	정기주주총회일 6주전	정기주주총회일 4주전	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9.7.3. 의결)

(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스튜디오셈머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 2017.3.31. 2017.6.30. 2017.9.30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도자기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미지급금 누락 (연결·별도 '16년 ~ '17년 3분기 : 2,55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00000(주) 인수와 관련하여 0000(주)에 끼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'16.12월에 합의하였음에도 '16년말 관련 미지급금을 누락하고, '17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'17년 반기까지는 선급금으로, '17년 3분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(연결·별도 '16년 : 3,576백만원, '17년 1분기 : 3,635백만원, '17년 반기 : 4,017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(주)0000000 및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</p> <p>③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연결·별도 '16년 : 409백만원, '17년 1분기 ~ 3분기 : 1,236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여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함</p> <p>④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(연결·별도 '16년 : 1,281백만원, '17년 1분기 : 1,255백만원, '17년 반기 : 1,230백만원, '17년 3분기 : 1,20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하여 동 보조금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에 일시에 잡이익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</p> <p>⑤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(연결·별도 '16년 반기 : 5,544백만원, '16년 3분기 : 8,68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결산일으로부터 1년 이후인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여 유동부채를 과대계상함</p> <p>⑥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</p> <p>- 회사는 '16.10.28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'16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과징금 부과액은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감사인지정 3년</p> <p>- 검찰고발(회사 및 前 대표이사 등 4명)</p> <p>※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,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</p>